질병관리청

정부혁신 보다나은 정부 1339 질병관리청 콜센터

<남아공·탄자니아 發 공항 입국자 방역절차 변경>

■ 남아공 · 탄자니아 發 공항 입국자에 대한 방역절차가 '21.9.20. 부터 아래와 같이 **변경**됨을 알려드립니다.

【적용대상】

○ 남아공 · 탄자니아 發 모든 내·외국인(공항)

【변경내용】

구 분		현 행	변 경
남아공 · 탄자니아 發	내국인	-시설격리 14일	-시설격리 7일 + 자가격리 7일 (7日 시설 입소비용 국비지원)
	외국인(장기)		
	외국인(단기)	시설격리 14일(임시시설) (14日 입소비용 본인부담)	

○ (내국인, 장기체류 외국인)

- 시설격리 7일 후 자가격리 7일로 전환(7일 시설 입소비용 국비지원)

*단, PCR음성확인서 부적합 확인 시 시설 입소비용(7일) 본인부담

○ (단기체류 외국인) 입국 후 한국정부가 지정한 시설에서 14일 격리(14일 입소비용 본인 부담)

【시행일】

○ '21.9.20. 입국자부터

- (추가 안내)

*남아공, 탄자니아는 9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로 선정된 바,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및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가 남아공, 탄자니아에서 9월에 입국 시 **격리면제 적용 제외**(시설격리 7일 + 자가격리 7일)

단, **탄자니아는 10월 예방접종완료자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제외된 바, 국내 예방접종완료자 및 해외예방접종완료 격리면제서 소지자가 탄자니아에서 10월에 입국 시 **격리면제 적용 가능**(남아공은 격리면제 적용 제외 유지)